전국농아인체육대회규정

제정 2010. 07. 23
일부개정 2013. 12. 04
일부개정 2019.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정관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국농아인체육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 4. 16.>

제2조(전국대회에 관한 권리) 본 연맹은 전국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제3조(대회회수) 전국대회는 2004년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회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회수를 통산한다.

제4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전국대회는 매년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되 6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회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아인올림픽,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경기행사제한) 전국대회 개최일 5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시도연맹 및 종목별 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 연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국농아인체육대회위원회

제6조(설치) 본 연맹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전국농아인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사업)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주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종합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경기종목, 종별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종합사업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부종목의 시범, 정식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참가요강에 관한 사항
5. 세부시상의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소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본 연맹에서 요청하는 일반적인 사항

제8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국대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9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 연맹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전국대회 개최 시도연맹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장 개최지 선정 <신설 2013. 12. 4>

제11조(유치신청)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지부는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이후 4년이 경과되어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치신청 시도지부는 별도로 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회개최 1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본 연맹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1. 대회유치신청서 1부<신설'19. 4. 16.>
2. 대회유치계획서 1부<신설'19. 4. 16.>
3. 예산지원확인서 1부<신설'19. 4. 16.>

제12조(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지부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년 전까지 이사회가 최종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유치신청 시도지부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유치 희망 시도지부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접수한 후 위원회가 2개 시도지부만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본 연맹은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부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유치신청서와 승인조건을 광역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최종 유치신청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1월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회 승인조건과 전국농아인체육대회에 관한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부는 대회 개최가 확정된 년도부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최종 유치신청서에 근거하여 대회 준비를 이행한다. 이때 위원회는 최종 유치신청서에 따른 사후 점검을 개최지와 함께 실시해야하고 최종 유치신청서에 따른 계획의 미이행시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부가 제5항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기 결정된 시도지부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한 후 본 연맹이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⑧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부가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협약과 유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부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관계를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반납한 년도부터 향후 10년간 전국체육대회의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13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개최지 확정 후 개최시도는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본 연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종합사업계획서는 대회개최 6월전까지 본 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3. 12. 4>

제4장 대회조직위원회

제14조(설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에 전국농아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개최 6월 이전에 구성하여 본 연맹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6조(임원)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제18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19. 4. 16.>

1. 위 원 장 : 1인
2. 부위원장 : 약간인
3. 위 원 : 약간인<개정'19. 4. 16.>
4. 간 사 : 약간인<개정'19. 4. 16.>

제17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시도농아인스포츠연맹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시도농아인스포츠연맹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19. 4. 16.>

제18조(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 시도 관련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한다.
2. 부위원장은 개최지 시도농아인스포츠연맹 임원을 포함하여 조직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공식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숙소운영부, 시설지원부, 수송운영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개최지역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개최지역내의 대회준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최

지역 관계자로 개최지역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
2. 부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 단체장, 해당지역 경찰서장, 농아인스포츠연맹 부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개정'19. 4. 16.>
3. 참여는 해당지역 경기단체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
4. 임원장은 해당지역 농아인스포츠연맹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개정'19.4.16.>
5. 운영위원은 해당지역 농아인스포츠연맹 이사, 감사 및 기타 인사로 한다.<개정'19.4.16.>

제20조(해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개최지역운영위원회는 전국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임원으로 계속 활동하며 대회 종료 후 이를 해산한다.

제5장 대회참가

제21조(예선대회) 본 연맹 각 시도연맹은 전국대회 참가 시도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19. 4. 16.>

제22조(참가신청) 시도별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대회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해당 시도연맹 회장이 본 연맹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대회참가) ① 전국대회는 본 연맹 각 시도연맹 단위로 참가하여야 하며 중앙 종목별 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개정'19. 4. 16.>
② 전국대회 참가비는 본 연맹에서 집행한다.<신설'19. 4. 16.>

제24조(참가요강) ① 전국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전국대회 참가요강은 대회개최 6월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연맹 종목별 경기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경기방법) 전국대회의 경기는 시도 대항으로 한다.

제6장 경기종목

제26조(경기종목) 전국대회의 경기종목(정식종목)은 국제기구에서 승인한 종목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정식종목이라 함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경기종목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종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종목의 운영) ① 본 연맹이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에 대하여 전국농아인체육대회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종목은 종합채점에 산입된다.
② 시범종목은 시도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경기단체가 참가선수를 정하는 자유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전시종목의 운영) ① 동호인이 참가하는 전시종목은 본 연맹이 개최지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종목은 경기단체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상메달과 상장은 본회가 지원하고 개최지는 경기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기장, 인력, 물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시종목은 종합채점에 산입된다.

제29조(세부종목) 각 경기종목의 실시 세부종목은 제24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개정'19. 4. 16.>

제30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종별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세부 경기종목 및 시범종목, 전시종목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31조(경기운영) 전국대회의 모든 경기는 종목별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본 연맹의 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단체구성) 개인경기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24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개정'19. 4. 16.>

제33조(경기운영방법) 전국대회 경기종목의 경기방법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경기방법에 의하되, 대진방법은 토너먼트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목별 경기기술위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4조(일정 및 대진추첨)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종목별 경기단체와 협의하여 본 연맹이 결정한다.

② 대진은 각 시도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연맹이 결정하며, 각 경기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35조(경기심판)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소청은 해당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한 사항은 경기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36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개인경기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단체는 실격으로 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경기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개정'19. 4. 16.>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실격된 선수는 차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미참가 사유가 천재지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무자격 선수출장이 확인되어 몰수되었을 경우, 소청 시도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제37조(지위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는 즉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8조(도핑검사) ①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대회기간 중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이하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자라 함) 메달, 점수, 상의 몰수 등 그 대회에서 획득한 모든 개인결과의 자격박탈이 이루어지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③ 한국도핑방지규정위반자가 소속한 시도선수단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얻은 점수 등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
④ 한국도핑방지규정위반자가 박탈당한 메달, 상, 점수 등 모든 지위는 다른 선수(팀)나 다른 시도선수단에 일체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39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본 연맹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대회개최 6월 전까지 본 연맹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종목별 경기단체의 사용 확인과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40조(경기장 규격)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의 국제경기규칙 또는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 및 경기 용기구 등) 조직위원회는 본 연맹 및 종목별 경기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경기장 출입신분증) ① 본 연맹은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대회임원 및 경기임원, 참가선수단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신분증의 견본을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채점 및 시상

제43조(순위결정) 전국대회의 시도별 순위는 본 연맹의 대회 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하여 시도별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제44조(채점) 전국대회의 채점은 복식으로 하며, 참가신청 시도의 수에 관계없이 8위까지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본 연맹 채점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시상구분 및 방법) 전국대회의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구분하며, 별도 시상내규에 의한다.

제9장 대회임원

제46조(임원구분) 전국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경기단체임원, 개최지집행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회 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47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본 연맹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본 연맹 회장으로 한다.
2. 명예대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 한다.
3. 부대회장은 본 연맹 부회장과 개최 시도연맹 회장으로 한다.
4. 고문은 본 연맹 고문 및 외부인사로 한다.
5. 임원은 본 연맹 이사, 감사, 시도연맹 회장, 종목별 경기단체장으로 한다.
6. 집행위원장은 본 연맹 사무국장으로 한다.
7. 집행부임원장은 개최 시도연맹 사무국장으로 한다.
8. 집행임원은 전국농아인체육대회위원회 위원, 개최 시도연맹 부회장, 이사, 감사로 한다.
9. 소청심의위원은 위원장에 전국농아인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 위원에 본 연맹 사무국장을 포함한 전국농아인체육대회위원회 위원 약간명으로 한다.<개정'19. 4. 16.>
10. 대회운영본부는 종목별 경기기술위원, 본 연맹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8조(경기단체 임원) 전국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종목별 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49조(개최지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 집행위원 및 개최지역운영위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개정'19. 4. 16.>

제10장 개·폐회식

제50조(초청) ① 개·폐회식 초청범위 및 초청석 운영은 개최 시도와 협의하여 운영한다.<개정'19. 4. 16.>
② 개·폐회식 초청은 본 연맹 회장 및 조직위원장 공동명의로 한다.

제51조(개·폐회식일정) ① 개회식 일정은 본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폐회식은 전국대회 최종일 경기종료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② 개회식의 식전 및 식후공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총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회식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본 연맹이 이를 진행한다.

제53조(개·폐회식 운영계획) ①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국대회 개최 6월 전까지, 세부행사계획은 2월 전까지 본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개·폐회식운영계획은 본 연맹의 개·폐회식 운영요령에 의한다.
② 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 행사를 직접하지 아니하고 행사업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본 연맹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9. 4. 16.>

제54조(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식순)
- 귀빈입장
- 개식통고 (1분)
- 선수단 입장 (27분)
- 국기에 대한 경례 (1분)
- 애국가 제창 (2분)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묵념 (2분)
- 개회선언 (1분)
- 환 영 사 (3분)
- 대회기게양 (2분)
- 성화점화 (6분)
- 개 회 사 (3분)
- 치 사 (5분)
- 선수·심판대표선서 (2분)
- 선수단 퇴장 (5분)

(폐회식 식순)
-개식통보 (1부)
- 선수단입장 (15분)
- 성적발표 (5분)
- 종합시상 (10분)
- 축 가 (2분)
- 폐회사 (3분)
- 대회기강하 (2분)
- 대회기전달 (5분)
- 환송사 (3분)
- 폐회선언 (1분)
- 성화소화 (3분)

다만, 위 식순의 변경이 필요할 시 주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입장대형) ① 개회식 시 행진은 전국농아인체육대회표식판, 태극기, 한국농아인스포

츠연맹기, 총지휘자, 전국농아인체육대회기, 기수단, 참가 시도 선수단, 심판단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 행진대형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개정'19. 4. 16.>
② 각종 표지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③ 시도 표지판에는 시도연맹명을, 시도 선수단은 해당 시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태극기 앞에는 어떠한 퍼레이드기도 입장할 수 없다.
⑤ 전국대회기는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운반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⑥ 기수단은 17개 시도연맹기, 종목별 경기단체기를 들고 행진하여야 한다.<개정'19.4.16>

제56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도 선수단의 입장대형은 시도 표지판, 기수, 지휘자, 선수단의 순서로 구성된다.
② 시도표지판 요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기수는 해당 시도선수단 중 1인으로 한다.
③ 선수단 입장순서는 차기개최지가 첫 번째로 입장하며, 이후 개최지에서 거리가 먼 순서로 입장하며, 맨 마지막에 개최 시도, 심판단 순으로 한다. 다만, 선수단 정열대형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본 연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국민의례) ① 국민의례는 관계법규에 의한다.
② 태극기 게양대는 주경기장 본부석 정면에 장식판 상판기준 5m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제58조(개회선언) ① 전국대회 개회선언은 조직위원장이 한다.
② "제○○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하여야 한다.

제59조(환영사) 환영사는 개최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며 1분 이내로 한다.

제60조(대회기 게양) ① 전국체육대회기는 흰색바탕의 중앙에 대회 상징마크를 위치케 하여 제작한다.
② 대회기는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하여야 한다.<개정'19. 4. 16.>
③ 대회기는 폐회식 때 개최지 시도연맹 회장이 대회장에게 반납하고, 대회장은 이를 차기 개최지 시도연맹 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에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되 대회기가 지속적으로 휘날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개회사) 개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제62조(선수·심판대표선서) ①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수대표와 심판대표가 선서할 때에는 참가 시도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하여야 한다.

<선 수>

선 서

제 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심 판>

선 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

제63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개최 45일 전까지 선정하여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선수대표 2인(남·여)
2. 심판대표 1인

제64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주경기장에서 최종 경기가 종료된 직후 거행하여야 한다.
② 성적발표는 집행위원장이 한다.
③ 종합시상은 시상운영요령에 의한다.
④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곡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곡으로 2분 이내로 연주 또는 합창하여야 한다.
⑤ 삭제 <개정'19. 4. 16.>
⑥ 폐회선언은 다음과 같이 조직위원장이 한다.
"제○○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11장 소청 및 처리

제65조(소청심의위원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참가금지) 전국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중도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본 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제67조(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전국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연맹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 칙('10.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